

『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 등을 정비하고, 유사·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 - 구매계획 및 실적을 상위 법령 및 「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·제출하도록 규정
- 녹색제품 구매의무 규정(안 제8조)
 -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규정 및 예외 사유 삭제
-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(안 제9조)
 -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

- 교육훈련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 변경
 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→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
- 법령상 근거 없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 조항 등을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